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8월 31일 종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 년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 편의증진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II. 주요골자

- 가. 장사시설의 위치를 규정 (안 별표1)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
- 나.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신청 시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가능함 (안 제6조)
- 다.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안 제7조)
 - 사망당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유골을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
 - 종로구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유족이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기 납골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 사망 시 가족이 합골을 원하는 경우의 화장한 유골
- 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 (안 제13조 별표2)
 - 사용료 : 1기당 200,000원
 - 관리비 : 위탁자와 개별계약
- 마.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안 제1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바. 장사시설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 (안 제16조 내지 제20조)

III. 검토의견

1. 배경 및 경위

○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약 270만평)가 묘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묘지증가로 인한 자연훼손과 국토잠식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며 따라, 묘지증가 억제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2000. 1. 12)되어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시한부매장제도를 도입하여 묘지 사용기한을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시한이 지나면 화장 후 납골당 이전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를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써,

정부의 화장 장려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사회환경의 변화 및 주민의 가치관 변화로 최근 화장률이 전국적으로 48%가 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65%를 상회하는 등 화장문화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 화장율 : 1981년 13.7%, 1991년 17.8%, 2001년 38.5%, 2002년 42.6%, 2003년 46.4%, 2004년 48%, 2010년 73% 추정

○ 그러나, 화장이나 납골은 찬성하되 인근에 화장장이나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는 납비현상으로 인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서울시의 경우 시립납골시설이 2005년 7월말 현재 안치능력 총 90,311기 중 80,047기가 안치(88.6%)되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납골시설의 추가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시·자치구간 장사시설 역할분담 계획”(2003. 3. 5) 및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계획”(2003. 8. 1)에 의거 우리 구를 포함한 7개구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액 시비지원(66억 7,500만원)을 받아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소재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과 “납골안치단 분양매매 계약”을 체결, 총 26,700기(종로구 2000기)를 자치구 전용 납골시설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 자치구별 분양매매 계약기수

(단위 : 기)

계	종로구	중 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26,700	2,000	1,700	4,000	4,000	5,000	5,000	5,000

- 분양매매대금 : 26,700기 × 250,000원 = 6,675,000,000원

2. 관계법령 검토

-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 규정에 의거 화장 및 납골의 화산을 위한 시책강구와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의무 등 기초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구립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운영·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고(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그 시설의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상위법령에 달리 저촉이 없는 범위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3.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7개구가 공통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3장 21개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장(총칙)은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제2장(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은 7개구 공동으로 분양매입하는 장사시설 중 우리 구 전용시설에 대한 명칭, 사용허가 절차 및 기간, 사용자가 지켜야할 의무, 사용료 부과기준 등 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3장(장사시설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 등)에서는 위 시설의 운영에 있어 시설의 위치와 업무 성격상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 조항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 안 제5조에서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당해 공공시설의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일정 조건(별지 2호서식)을 부하여 사용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행위로써,

지방재정법 제74조·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제85조 등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등에 관한 관계법령의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사용허가 개시전 우리구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가 사유토지를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법리로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719 판결)

- **안 제6조**에서 납골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 사용기간 연장은 5년씩 3회로 제한한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현행 서울시립납골시설 운영(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준하여 정한 것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안 제7조** 내지 **제12조**는 시설 사용자의 자격, 사용권의 소멸·취소 및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제10조 내지 제16조)에 기초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 **안 제13조**에서 납골시설 사용료를 최초 15년 사용에 20만원, 5년단위 연장 사용에 10만원(일반주민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서울시립납골시설 사용료에 비하면 다소 높은 금액이나 현재 서울시에서 인상 추진중에 있는 사용료에 준하여 7개 구청이 공동으로 정한 금액으로써, 사설납골시설의 분양가가 200~300만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어서 우리구 주민의 복지·편의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별첨자료 참조)
- **안 제16조**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위탁의 기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가급적 당해 납골시설을 조성·분양한 업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 기타 안 제17조 내지 제20조 규정은 운영위탁에 따른 위·수탁자간의 일반적인 이행사항 등에 관한 내용들로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서울특별시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4조 참고)

IV. 관계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墓地的 증가로 인한 國土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火葬 및 納骨의 擴散을 위한 施策을 강구·施行하여야 한다.

第5條 (墓地등의 需給計劃 수립)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區域안의 墓地·火葬場 및 納骨施設의 需給에 관한 中·長期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第12條 (公設墓地 등의 設置) ①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 特性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과 공동으로 設置·관리할 수 있다.

第14條 (私設火葬場 등의 設置)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아닌 者가 火葬場(이하 "私設火葬場"이라 한다) 또는 納骨施設(이하 "私設納骨施設"이라 한다)을 設置·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7條 (墳墓의 設置期間)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私設墓地에 設置된 墳墓의 設置期間은 15年으로 한다.

第19條 (墓地의 事前賣買 등의 금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設墓地를 設置·관리하는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私設墓地를 設置·관리하는 者는 埋葬할 자가 死亡하기 전에는 墓地의 賣買·讓渡·賃貸·使用契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歲이상인 者가 사용하기 위하여 賣買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第9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사. 墓地·火葬場 및 納骨堂의 운영·管理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第95條 (事務의 委任등)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 등 住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事務를 위임 또는 委託한 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135條 (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關係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第72條 (公有財産의 범위·구분 및 종류) ②公有財産은 그 用途에 따라 이를 行政財産·保存財産 및 雜種財産으로 구분하고, 行政財産은 이를 公用財産·公共用財産 및 企業用財産으로 分類한다.

第74條 (公有財産의 보호) ①누구든지 公有財産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許可없이 사용 또는 收益하지 못한다.

第82條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管理 및 處分) ①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은 이를 貸付·賣却·交換·讓與·信託 또는 代物辨濟하거나 出資의 目的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用途 또는 目的에 障害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하는 경우

2.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서의 性質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경우

3. 國家·다른 地方自治團體등 다른 法人 또는 個人所有의 財産과 交換하여 그 交換받은 財産을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한 경우에는 第83條第2項 및 第8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違背되는 행위는 이를 無效로 한다.

④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사용·收益許可를 받은 者가 그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管理를 소홀히 하여 財産上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使用料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使用料의 金額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8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 계속 存置할 필요가 없는 財産에 대하여는 公有財産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用途를 變更하거나 廢止할 수 있다.

第109條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②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에게 委託하여 그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재산 : 다음 각목의 재산

- 가.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나.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다.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제80조 (등기·등록 및 대장관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소관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85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당해 허가의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보상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양여하는 때에는 10년이내의 기간동안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제96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806호)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서울특별시시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①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산골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치구의 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사용기간 제한) ①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②시립묘지등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6조·제8조·제13조·제14조·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당해 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거 및 개장명령) ①사용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간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제16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시립묘지등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위탁) ①시장은 시립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지원)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시장사동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0조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①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민생활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추가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추가 연장기간은 최장 30년까지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묘지 등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된 유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위탁) ①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수리
2.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립묘지등의 사용허가
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4.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
5.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립묘지, 시립납골시설의 사용기간 연장허가
6.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7.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개장명령
8.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구조·설치
9.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②공단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장사 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도권일원 납골시설 분양가 및 관리비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안치능력	분 양 가	관 리 비
종로 외 6개구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산 330-26	5,000기	20만원 (사용료)	5년 16만원 10년 32만원 15년 45만원
(재)효원 납골공원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산 330-26	48,904기	200~300만원	5년 18만원
용흥사추모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	32,000기	220~250만원	5년 18만원 영구 30만원
벽제중앙 추모공원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8-5	14,640기	220~380만원	5년 17만원 영구 50만원
유토피아 추모관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산 23	30,000기	390~430만원	5년 25만원
남양주 추모관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850-4	17,000기	200~300만원	영구 50만원
통일로 추모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61-69	28,080기	150~300만원	5년 18만원 영구 50만원
자유로 청아공원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478-11	42,000기	210~440만원	5년 18만원

※서울시립 납골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	내 용	사 용 요 금	
		서울시민	기타지역
일 반 시 민	- 사용료 1위당(최초 15년 사용)	12만원	24만원
	- 재사용료 1위당(5년마다기간연장시)	6만원	12만원
국 가 유공자	- 사용료 1위당(최초 15년 사용)	6만원	24만원
	- 재사용료 1위당(5년마다기간연장시)	3만원	12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 급 자	- 사용료 1위당(최초 15년 사용)	10만원	24만원
	- 재사용료 1위당(5년마다기간연장시)	5만원	12만원